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

파주시 공고 제2026-2205호(2026.8.6.)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19.



□ 사업내역[건축허가(신축) 개요]

대지위치	건축면적	층수 (동수)	주용도	안전점검비용
	연면적			
동패동 2352-6번지 [266.9㎡]	160.10㎡	지상3층 (1개동)	단독주택 (다가구주택-3가구), 제2종근린생활시설 (수리점)	금3,400,000원 (부가세 포함)
	371.01㎡			

□ 지정결과[평가점수 결과]

대지위치	업체명	제안가격	평가점수
동패동 2352-6번지 [266.9㎡]	엘림 주식회사	금2,054,480원 (부가세 포함)	96.80

※ 평가점수 = 사업수행능력평가(40%) + 수행가격평가(60%)

□ 기타 안내사항

- 1)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동 건축허가의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 완료 후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참여인원의 투입인원, 투입일, 금액산정내역 및 참여인원의 관련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)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파주시 허가3과,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

3)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[※ 시공자 안전점검 결과 제출방법 :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www.csi.go.kr)을 통하여 제출]

※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허가3과 건축허가3팀(031-940-8782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끝.

PAJU